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증장기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기재 정정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생 략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전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전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생 략)	제26조(환매연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전전영업일</u>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
-	<신 설>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